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규정

목 차

제1조(근거 및 명칭)	1
제2조(목적)	1
제3조(기능)	1
제4조(구성)	1
제5조(위원의 선임)	1
제6조(위원의 임기)	1
제7조(위원의 해촉)	1
제8조(회의 소집)	1
제9조(심사 절차)	1
제10조(TUE 승인)	2
제11조(TUE의 소급승인)	2
제12조(수당지급)	2
제13조(개인정보 보호)	2
부칙	2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규정

제 정 2018. 8. 1.

제1조(근거 및 명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37조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이하 'TUEC'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 'TUE'라 한다)국제표준에 따라 위원회가 TUEC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TUEC는 제 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금지약물 국제표준에 대한 사항
2.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TUE 심사에 대한 사항
3. 금지약물 성분 자문에 대한 사항
4. 기타 TUE에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TUEC는 TUEC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TUE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TUEC를 다수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 위원장은 임상, 스포츠 및 운동의학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장애인선수 치료경험이 있는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 TUEC 위원을 선임한다.

②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UEC 과반수는 위원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UE를 신청한 선수가 속한 경기단체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TUEC 위원장과 TUEC 부위원장은 경력에 따라 TUEC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TUEC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위원이 질병, 해외근무,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TUE 심사가 곤란한 경우
- ③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과 TUEC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9조(심사절차) ①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 선수(또는 선수지원요원)는 TUE 신청서와 의료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TUEC는 판정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TUEC 위원은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의 종류는 '승인', '불승인' 또는 '반려'로 한다.

- ③ 위원회는 TUE 심사결과에 대한 공문 및 판정서를 선수에게 통지하며 TUE 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효만료일 이전 선수가 재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판정서에 포함한다.
- ④ 선수가 제출한 TUE가 TUE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TUEC의 심사없이 위원회가 접수취소 처리할 수 있다.
- ⑤ TUEC 위원장과 TUEC 부위원장은 심사결과의 최종 의견조율권을 가진다.

제10조(TUE의 승인) 선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TUE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① 사용하려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급성 또는 만성 의 치료 치치가 필요하고,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야한다.
- ② 급성 또는 만성 의 치료치 후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 이상의 추가적인 어떠한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야한다.
- ③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에 대한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④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라도,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없이) 사용 당시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을 이전에 사용한 것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제11조(TUEC의 소급승인) 선수는 다음 조건에서 유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하여 소급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① 응급 치료 또는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② 기타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시료채취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TUEC에서 검토할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 ③ 소급 TUE 신청을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규정이 선수에게 적용되는 경우
- ④ 소급 TUE가 승인될 경우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WADA 및 위원회에 의하여 동의된 경우

제12조(수당 지급) ① TUEC 위원 1인당 1건 심사에 대해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② 직무 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비용 등의 실비는 위원회 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 조(개인정보보호) ① 위원회 관계자와 TUEC 위원들은 TUE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선수들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

- ② TUEC 위원은 이해의 상충 및 기밀 유지에 대하여 서명하여야한다.

부 칙 <2018.8.1 >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